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582호

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0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16호 신조공인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채용 공고 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34호 거북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공고 16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석남중학교	서구 석남동 329-1번지 일원	12,000			2005. 10.24	
변경	학교	석남중학교	서구 석남동 329-7번지 일원		증 305	12,305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학교1	석남중학교	면적 증가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증가

2. 지형도면 : 따로붙임(게재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0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 명칭 :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면적) : 인천 서구 신현동 254, 264-5, 273-9, 273-10(169,157.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칭 :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 서구 심곡동298번지 공성빌딩 7층 701호
 - 다. 대표자 : 조합장 주옥삼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6. 9. ~ 2009. 6.
6. 사업시행인가일 : 2005. 3. 29.
7. 재건축사업 주택건설계획
 - 가. 대지면적 : 163,872.70㎡
 - 나. 건 폐 율 : 14.80%
 - 다. 용 적 륜 : 256.93%
 - 라.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22~33층 / 36개동 / 3,331세대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주체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주옥삼)	좌 동
위 치		서구 신현동 254번지외 2필지(264-5, 273-10)	서구 신현동 254번지외 3필지(264-5, 273-9, 273-10)
규 모		지하2층 / 지상22~33층 35개동 3,217세대	지하2층 / 지상22~33층 36개동 3,331세대
사업규모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대지면적	160,485.00㎡	163,872.70㎡
	연 면 적	530,751.250㎡	565,352.612㎡
	건 폐 율	13.58%	14.80%
	용 적 율	249.84%	256.93%
	조경면적	48,400.50㎡	60,878.30㎡
형식	25평형	699세대	좌 동
	33평형	1,318세대	1,346세대
	40평형	136세대	178세대
	43평형	596세대	598세대
	56평형	260세대	302세대
	62평형	208세대	208세대
	계	3,217세대	3,331세대
주요 복리 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4,200.00㎡ 427.67㎡ 611.65㎡ 4,416대	3,852.20㎡ 427.70㎡ 1,649.00㎡ 4,559대
사업기간		2006. 9 ~ 2009. 6	좌 동
사 업 비		490,000,000,000원	538,589,000,000원
특기사항		관계법령 및 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16호

신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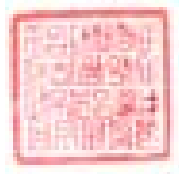
1. 공인신조 사유

- 여권인지 세외수입처리를 위한 공인신조

2. 신조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07. 6. 14

3. 신조공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신조 공인인영

신조 공인명	규격(cm)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수입대체경비 인천광역시서구 분임입출납의인	1.8cm ² × 1.8cm ²		여권인지 세외수입 처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채용 시행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1. 채용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계		4명	
주 민 복 지 과 (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소 장	1	
	부 장	1	
	팀 장	1	
	운영요원	1	

2.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나. 제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합니다.)

3. 응시자격

- 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준용)
- 2)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3) 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준 참고)

나. 응시연령

- 1) 소 장 : 1943. 7. 1 이후 출생자
- 2) 이하 직원 : 1948. 7. 1 이후 출생자

다.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비고
공 통 (필수)	문서작성, 정보검색, 통신 등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소 장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	
부 장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조교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5.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팀 장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자 4.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운영요원	1.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2급 이상)을 소지한 자 2.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채용기간 : 임기는 2년이며, 실적평가를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6.21 ~ 6.22(2일간) 10:00 ~ 17:00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FAX 및 우편접수 불가)

※ 원서는 인터넷 출력 또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교부합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2007. 6. 28

라. 면접시험 일시 : 2007. 7. 5(목) 14:00 (예정)

※ 응시 접수 인원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장소 :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 (변경가능)

5. 합격자 발표일 : 2007. 7. 10 (예정)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반명합판 사진 2매)

※ 응시원서 수수료 : 소장, 부장 7,000원 / 팀장, 운영요원 5,000원 (인천광역시 서구 수
입증지)

나. 이력서(사진부착) 1통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1통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마.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각1통

바.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 시험에 응시코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나.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접수장소로 오셔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
니다.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지참)

라.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
자의 책임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 (☎560-4971~5)

※ 인터넷 시험정보제공 :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응시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년 월 일

주 소	(☎)									
최 종 력	년	월	학 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년	월	대 학 교				대 학 원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종 사					
응 시 번 호	성 명	(한 글)						자격증 소지 여부		
		(한 자)								
응 시 야	주 민 등 록 번 호							-	종목및등급 :	
										등록번호 :
								확 인		

증지첨부란	응시원서(부분)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 채용시험)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 시 번 호		성 명	(한 글)					
				(한 자)					
	응 시 야		주 민 등 록 번 호						

응 시 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 채용시험)		성 명	(한 글)					사 진(2)	
응 시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
응 시 야		2007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면접 대기 장소에 오셔서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면접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아래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필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② 학 력 : 학교명, 학과 및 학년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수학 구분중 해당하는 것에 ○ 표 할 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기재할 것.
- ③ 경 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526호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규칙안

2.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시설 설치자 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증액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가스 수용가 시설설치자금 증액과 대출금리를 조정하고자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1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전화번호 : 560-4461(FAX 566-9898)

나.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www.seo.incheon.kr)
게재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안)

[1993. 5.26 규칙 제286호]

개정 1996. 2. 2 규칙 제378호

2000. 5.24 규칙 제515호

2000.11.23 규칙 제52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3. 8. 2 규칙 제604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에너지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5.24, 2003. 8. 2, 2006.6.26)

②구금고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자금을 융자한다.(개정 2000. 5.24)

제3조(융자대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융자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기존주택(단독, 다세대 주택)중 집단공급 요청지역
2. 상·하수도 및 도로굴착 공사지역중 요청지역
3. 타 공사 병행구간중 요청지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융자 신청등)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융자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구금고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 5.2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 8. 2, 2006. 6.26)
2. 위원은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기타 위촉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5.24, 2006. 6.26)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심의 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용자대상지역의 우선순위 심의
2. 기타 위원장이 용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0. 5.24, 2006.6.26)

③위원회를 개최했을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지원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가구당 최고 5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 낮게 한다. (개정 2007.6.)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3. 5.26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 규칙 제3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한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5.24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3 제5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3. 8. 2 규칙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34호

거북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북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거북시장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출(의견 제출기한내 서면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1. 명 칭 :** 거북시장 정비사업(재개발) 추진계획**2. 사업추진계획 개요****가. 정비사업구역 지번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8번지 외 30필지**나. 대지면적 :** 7,126.8㎡**다. 사업규모**

- 건물연면적 : 62,745.73㎡ (지하 5층, 지상19층)
- 용 도 : 상가 및 아파트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후 30개월
- 사 업 비 : 80,5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거북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공규진)

3. 시장정비 추진사유 : 건물의 노후 및 경쟁력 상실**4. 공람 및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032-560-4433, FAX 032-560-4439)**6. 공청회 개최****가. 일 시 :** 2007. 6. 26.(화) 15:00**나. 장 소 :** 석남2동사무소 3층 회의실**다. 설명자 :** 거북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 공규진 및 대리인

라. 내 용 : 거북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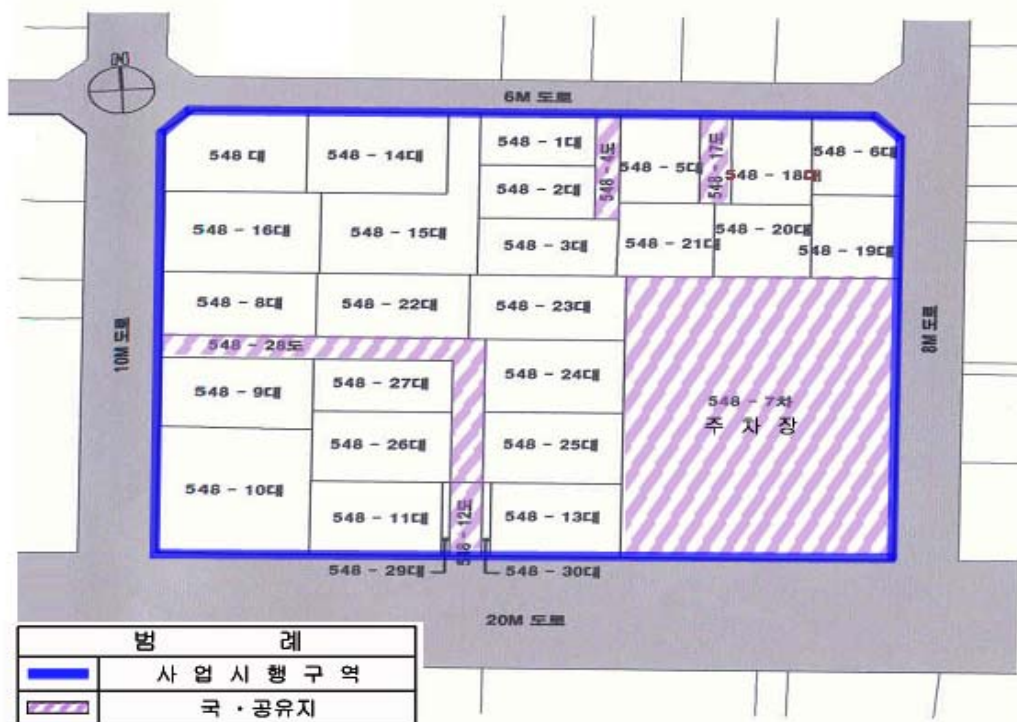
마. 참석대상 : 거북시장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7. 의견(서면) 제출 방법 및 기한

○ 거북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등은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2007. 6. 29.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추진계획 관련 의견 및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8. 거북시장 도면



※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